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65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임미애 · 김정호 · 송옥주
윤준병 · 윤후덕 · 이수진
이연희 · 임호선 · 주철현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약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해운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음.

최근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수에즈 운하 항로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중동 지역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완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북극항로의 대안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이후 2016년까지 시범운항을 실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간 정책이

연구·협력 중심에 머물러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이 미흡했음.

특히 우리나라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에 철강·자동차 부품·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잠재력이 큼. 특히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기능항만으로서 북극권 에너지·자원 도입과 저탄소철강 제품 수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정수소·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임. 북극권은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의 약 3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린란드 등 북극권 국가의 핵심광물 자원도 주목받고 있어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자원 수입 다변화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극항로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극항로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북극항로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

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극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
2.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포함하여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3. “북극항로 연관산업”이란 북극항로를 활용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산업이나 북극항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또는 북극항로 활용 확대에 따라 촉진되는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바목에 따른 해양환경 관련 산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 관련 산업

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및 조선·플랜트 및 선박부품·기자재 관련 산업

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3호의 해외자원의 개발·수입 및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 관련 산업

사.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해사안전산업

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산업

차. 그 밖에 북극항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북극항로사업자”란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극해와 북극항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지역별·부문별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의 조성·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연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9.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북극항로 운항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

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이하 “육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육성전략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북극항로위원회) 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관련 관계 부처별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2. 북극항로 관련 기술·경제·사회·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

다.

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항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실무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북극항로추진본부)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둔다.

② 북극항로추진본부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의 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2. 북극항로 운항 및 물류 데이터 구축·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
3.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
4. 북극항로 안전운항 정보, 고정밀 위치 정보 및 최적항로 정보 제공 등 항해안전 지원
5.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への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8조의 시행일부터 이 법 전부 시행일 전까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